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포항시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3. 12.



< 재심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1.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b>계</b>		<b>26건</b>	<b>14</b>	<b>12</b>	<b>3</b>	<b>46,974</b>	<b>6</b>	<b>1,150,997</b>	<b>1</b>	<b>32,000</b>
1	○○○○○과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 부적정		1						
2	○○○○○과	직렬불부합 승진인사 운영 부적정		1						
3	○○○○○과	정원을 초과한 승진임용 부적정		1						
4	○○○○○과	결원보충없이 인사시기를 조정하여 승진임용		1						
5	△△△△△과	물품 구매 적격심사 경영상대 평가 부적정			1					
6	△△△△△과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부적정			1					
7	▽▽○○○○○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부적정			1					
8	○○○○○과	현업공무원 지정 및 운영 부적정	1		1	770				
9	⊗ ⊗ 과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등 사후관리 부적정	1							
10	⊙⊙⊙⊙⊙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교육관리 부적정			1					
11	⊙⊙⊙⊙⊙과	문화예술 활동지원 운영경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1		1	1,778				
12	●●●●●과	의료급여사업 추진 부적정	1		1	44,426	1	621 (환급)		
13	●●●●●과	농지전용허가 처리 부적정			1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현 ◯◯◯◯◯과)

**내 용**

포항시에서는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관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고,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7조(구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VI. 승진임용 2.근속승진)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 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승진, 전출,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직급으로 신규 임용이나 승진 등이 총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근속승진자가 심사를 통해 승진할 경우 당시 증가된 것으로 간주했던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은 당초의 직급으로 환원되어 이를 승진요인으로 책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자의 승진의결 후속으로 그 바로 하위 직급을 승진 의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14	◯◯◯◯과	숙박시설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1							
15	◯◯◯◯과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1							
16	5개 읍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업무 처리 부적정	1							
17	◯◯◯◯과	석유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 부적정	1							
18	◻◻◻◻과	주차장법 위반 기계식주차장 행정처분 부적정	1					1	32,000	
19	◻◻◻◻과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20	구 ◻◻ ◻◻ ◻◻ ◻◻ 과	◻◻ ◻◻ ◻◻ 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219,404			
21	◻ ◻ ◻ 과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36,842			
22	◻ ◻ ◻ 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539,005			
23	◻ ◻ ◻ ◻ 과	◆◆천 오염도 정화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1							
24	◻ ◻ ◻ ◻ 과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1			1	63,750			
25	◻ ◻ ◻ ◻ ◻ 과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1							
26	◻ ◻ ◻ ◻ 과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1			1	291,375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3. 6.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7급 근속승진자 8명을 6급 승진자로 의결하고 그 후속으로 8급 8명을 7급 승진자로 의결하였는 바, 7급 근속승진자가 6급 승진을 하게 되면 7급에는 결원이 없어 7급 근속승진자의 6급 승진 후속으로 8급 8명을 7급으로 승진의결 할 수 없었음에도 2020. 6. 26.부터 2023. 6. 29.까지 7회의 승진인사를 시행하면서 7급 근속승진자의 6급 승진 후속으로 8급 40명을 7급으로 부당하게 승진 의결하였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직렬불부합 승진인사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현 ○○○○○과)  
**내 용**

[표]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부당 승진 현황

(단위 : 명)

연번	승진심사일	근속승진자 심사승진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결원 및 승진			부당승진	비고
		승진직급	승진인원	근속승진자	하위직급	계획인원	승진인원		
	계		114	40		137	137	40	
1	2020.6.26	◁◁7급→6급	12	5	◁◁8급→7급	18	18	5	
		◀◀7급→6급	1	1	◀◀8급→7급	2	2	1	
		▷▷7급→6급	2	1	▷▷8급→7급	2	2	1	
2	2020.12.24	◁◁7급→6급	14	3	◁◁8급→7급	15	15	3	
		▶▶(♠♠)7급→6급	1	1	▶▶(♠♠)8급→7급	1	1	1	
		♠♠7급→6급	1	1	♠♠8급→7급	2	2	1	
		▷▷7급→6급	1	1	▷▷8급→7급	1	1	1	
3	2021.6.25	◁◁7급→6급	13	4	◁◁8급→7급	13	13	4	
		◀◀7급→6급	1	1	◀◀8급→7급	3	3	1	
		♡♡7급→6급	5	1	♡♡8급→7급	4	4	1	
4	2021.12.24	◁◁7급→6급	16	2	◁◁8급→7급	16	16	2	
		♥♥7급→6급	2	1	♥♥8급→7급	3	3	1	
5	2022.06.24.	◁◁7급→6급	11	3	◁◁8급→7급	14	14	3	
		♡♡7급→6급	1	1	♡♡8급→7급	1	1	1	
6	2022.12.23.	◁◁7급→6급	10	6	◁◁8급→7급	12	12	6	
7	2023.6.29.	◁◁7급→6급	13	2	◁◁8급→7급	18	18	2	
		♥♥7급→6급	3	1	♥♥8급→7급	5	5	1	
		♡♡7급→6급	5	4	♡♡8급→7급	5	5	4	
		▷▷7급→6급	2	1	▷▷8급→7급	2	2	1	

그 결과 근속승진자 등 별도정원 인원에 대한 관리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승진할 수 없었던 8급 40명에게 7급으로 승진하는 특혜를 주었다.

###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포항시에서는 퇴직, 승진후속 등 결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의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에서는 포항시 공무원 직급에 따른 직렬별(복수·단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결원에 따른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요인을 책정할 때에는 결원 발생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거나 복수직 정원이 있는 경우 그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직렬 간에 직렬을 조정하여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 후 승진임용을 해야 했다.

그런데도 포항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 10. 22. 2022년 상반기 5급 승진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2022. 1. 1. 예정되어 있는 **▶▶▶▶▶▶▶▶▶▶**의 공로연수에 따른 승진요인을 책정하면서 □□□□ 6 → 5급의 경우 **▶▶▶▶▶▶▶▶▶▶** 직렬과 복수로 규정되지 않아 후속 승진이 가능하지 않았음에도 □□□□ 6 → 5급으로 후속 승진 가능하다고 2021. 10. 18. 2022년 상반기 5급 승진인사 예고(**▶▶▶▶▶▶▶▶▶▶**과-31971)를 시행하고,

2021. 10. 22. □□□□ 6급 **▶▶▶▶▶▶▶▶▶▶**을 5급으로 승진심의 후 2022. 1. 1. 승진 임용하는 등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직렬조정이 불가능한 직렬을 후속승진 요인으로 책정하여 □□□□ 5급 1명 및 △△(△△) 6급 1명을 승진임용하고 그 후속으로 □□□□ 6급 1명 및 7급 1명, △△(△△) 7급 1명 및 8급 1명을 승진임용 하였다.

[표] 복수직 정원 없는 직렬간 조정 후 승진 현황

연번	승진의결일 (임용일)	결원발생 사유	결원에 대한 승진의결내역		후속승진 내역		규칙상 복수직렬현황
			직급	인원	직급	인원	
1	2020.12.24. (2021.1.1.)	▶▶▶▶▶▶6급 공로연수	△△(△△)7급	1명	• 8→7급	1명	* ▶▶▶▶▶▶ 6급 직렬현황 -     <<<< ▶▶▶▶▶▶ == - <<<< ▶▶▶▶▶▶ == - <<<< ▶▶▶▶▶▶
			→ △△(△△)6급		• 9→8급	1명	
2	2021.10.22. (2022.1.1.)	▶▶▶▶▶▶▶▶▶▶ 공로연수	□□□□6급	1명	• 7→6급	1명	* ▶▶▶▶▶▶▶▶▶▶ 직렬현황 -     ▶▶▶▶▶▶▶▶▶▶ -     ▶▶▶▶▶▶▶▶▶▶ - ▶▶▶▶▶▶▶▶▶▶ -     ▶▶▶▶▶▶▶▶▶▶
			→ □□□□5급		• 8→7급	1명	

그 결과 복수직렬로 규정되지 않아 승진할 수 없었던 직렬인 △△(△△) 7 → 6급, □□□□ 6 → 5급으로 승진임용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정원을 초과한 승진임용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현 ○○○○○과)  
**내 용**

포항시에서는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 하되,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하면 포항시에 두는 ▲▲ 7급의 정원은 2020. 1. 1. ~ 2022. 12. 30.까지는 19명, 2023. 1. 1. ~ 감사일 현재까지는 21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의 범위에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 임용하여야 하고, ▲▲ 7급의 경우에는 더욱이 단수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별 최대정원을 초과 하여 승진임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시행시기별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별표의 ▲▲7급에 대한 정원현황은 확인서의 [표] 참고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 12. 24.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2022. 6. 24.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 2023. 6. 29.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 7급의 현원은 정원대비 결원이 없거나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승진임용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 7급에 대한 승진임용이 가능하다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 심의·상정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임용하도록 하였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결원보충없이 인사시기를 조정하여 승진임용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현 ○○○○○과)  
**내 용**

포항시에서는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정원초과 승진임용 현황

(단위 : 명)

승진심사일 (승진임용일)	심사당시 정·현원 및 과원				정원초과 승진임용			비 고
	당해직급	정원	현원	과원	요인책정	승진인원	현원	
계						4		
2020.12.24. (2021.1.1.)	▲▲ 7급	19	19	-	승진후속(1)	1	20	정원초과 +1
2022.6.24. (2022.7.1.)	"	19	21	2	결원보충(1)	1	22	정원초과 +3
2023.6.29. (2023.7.1.)	"	21	22	1	승진후속(2)	2	23	정원초과 +2

그 결과 부적정한 인사 운용으로 인해 정원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승진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승진할 수 없었던 ▲▲ 7급 4명이 승진하게 되었으며,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7급의 현원이 정원 대비 2~3명을 초과하게 되었다.

###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33153호) 제2조 및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또는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실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조속히 충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결원을 보충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승진요인으로 책정하지 않고 별도의 기한 없는 공석을 유지한 채 그로 인한 결원을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정 대리를 기한 없이 운영하다가 승진후보자 명부가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 기한 없이 유지했던 공석을 결원요인으로 책정해서 승진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2022. 6. 24. 인사위원회에 승진정보임용 기준 심의자료를 제출하면서 4급 결원 책정과 관련하여 공로연수 5명 및 명예퇴직 1명 등 총 6명의 요인이 발생하였지만 2022. 12. 31.자 종료예정으로 운영 중인 한시기구(▽▽▽▽▽▽, 4급) 등에 대한 결과 반영 후 승진이라는 명목을 사유로 결원요인 총 6명에서 한시기구(▽▽▽▽▽▽)과 무관한 4급 1명을 추가로 승진예정인원에서 제외하여 총 4명을 5급 → 4급 승진예정인원으로 책정하고 2022. 7. 1. 4급(직위승진포함) 4명을 승진임용하였다.

그리고 한시기구로 2022. 12. 31. 종료예정인 ▽▽▽▽▽▽에 2022. 7. 1. 4급 ▼▼▼를 ▽▽▽▽▽▽장으로 전보발령하고 한시기구와 무관한 ☆☆☆☆☆☆☆(4급), ★★★★★장(4급)을 공석으로 유지한 채, 해당 실국장 직위는 사고가 아닌 결원으로 직무대리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에도 각각 ○○○장 및 ●●●●●장을 2022. 7. 1. ~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대리로 명령하였다.

그 후 아래 [표]와 같이 2022. 12. 23. 2023년 상반기 승진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22. 6. 24. 2022년 하반기 때 추가로 제외하였던 4급 직위 1자리(◎◎◎◎◎장)를 공석이라는 요인으로 4급 직위 승진인사요인으로 책정하고 2022. 12. 23. 인사위원회 승진정보임용 기준 심의자료를 제출하여 2023. 1. 1. ◇◇ 5급 ◆◆◆를 4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표] 4급 승진예정인원 변동에 따른 승진임용후보자 명부 현황

구분 (인사위원회)	결원 인원	결 원 발생일	승진 요인	승진임용 (명)	승진 후보자	비 고
'22년 하반기 2022.6.24.	6	• 2022.7.1. 공로연수 5명  • 2022.6.30. 명예퇴직 1명	4	• [00]ㄷ 5→4급 : 1명 • [00]§ 5→4급 : 1명 • [00]# 5→4급 : 1명 • [00]직위승진 : 1명 - 한시조직 종료예정 : 0 - [00] 5→4급 : 0 (공석)	2명 1명 1명 2명 -	◇◇ 5급 ◆◆◆ 후보자명부 미등재  (3년 9개월)
'23년 상반기 2022.12.23.	공석유지 후 결원산정		1	• [00] 5→4급 : 1명	4명	◇◇ 5급 ◆◆◆ 후보자명부 등재 (4년 3개월)

그 결과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충원하지 않고 승진심사를 늦춰 해당 직위를 기한 없는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승진후보자 명부가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 승진인사를 시행함으로써 2022. 6. 24. 2022년 하반기 당시 승진최저연수 미도래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도 되지 않았던 ◇◇ 5급 ◆◆◆가 2022. 12. 23. 2023년 상반기 승진후보자명부 등재 및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진대상자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 구매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 침출수처리장 수처리용 약품 구입 및 ■■■ 생산성향상 지원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입찰공고일	계약상대자
□□□□□□ 침출수처리장 수처리용 약품 구입	2021. 2. 9.	156,928	2021. 1. 28.	▽▽▽▽▽(주)
■■■ 생산성향상 지원자재 구매	2021. 9. 8.	211,400	2021. 8. 1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1. 1. 1. 및 제166호 2021. 7. 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입찰자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재난 복구 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만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했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하거나 유효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했으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포항시 ☎☎☎☎과에서는 ‘□□□□□□ 침출수처리장 수처리용 약품 구입’, ‘■■■ 생산성향상 지원자재 구매’의 응찰<sup>2)</sup>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보완요구 없이 평가등급을 부적정하게 인정하여 심사하였다.

2) 적격심사 대상으로 □□□□□□ 침출수처리장 수처리용 약품 구입의 1순위 업체는 ‘▽▽▽▽▽(주)’이며, ■■■ 생산성향상 지원자재 구매의 3순위 업체는 ‘℃℃℃℃℃℃℃’ 임

[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내역

계약명	업체명	입찰공고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비고
□□□□□ 침출수처리장 수처리용 약품 구입	▽▽▽▽▽(주)	2021. 1. 28.	2021. 2. 5.	2021. 6. 30.	BB-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
■ ■ ■ ■ ■ 생산성향상 지원자재 구매	℃℃℃℃℃	2021. 8. 19.	2021. 9. 3.	2022. 6. 30.	BBB+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

한편 위 사실이 감사기간 중 지적되어 계약담당자를 통해 해당 업체들  
에게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한 결과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포항시 △△△△△과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8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적격심사 결과

(단위 : 천 원)

계약체결현황				심사분야·항목	배점	심사평점	정당평점	비고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합계		88.04	69.04	적격 통과 점수 (85점)
□□□□□ 침출수처리장 수처리용 약품 구입	▽▽ ▽▽▽(주)	156,928	2021. 2. 9.	물품납품	기술능력	10	10 <sup>3)</sup>	
				이행능력	경영상태	20	19.3 <sup>4)</sup>	
				입찰가격	신인도	70	58.04 <sup>5)</sup>	
				신인도	+2~-2	1	1 <sup>6)</sup>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합계		85.2	55.5	적격 통과 점수 (85점)
■ ■ ■ ■ ■ 생산성향상 지원자재 구매	℃℃℃℃℃	211,400	2021. 9. 8.	물품납품	기술능력	10	10 <sup>7)</sup>	
				이행능력	경영상태	30	29.7 <sup>8)</sup>	
				입찰가격	신인도	60	45 <sup>9)</sup>	
				신인도	+2~-2	0.5	0.5 <sup>10)</sup>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10점) 부여  
4)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평가) 자료는 '없음(0점)'으로 평가  
5)

$$58.04 = 70 - 4 \times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156,928,390)}{\text{예정가격}(184,600,075)} \right) \times 100$$

6) 소상공인 신인도 : 1점  
7)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10점) 부여  
8)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평가) 자료는 '없음(0점)'으로 평가  
9)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45 = 60 - 2 \times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211,400,000)}{\text{예정가격}(219,754,925)} \right) \times 100$$

10) 여성기업 신인도 : 0.5점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부적격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2022년 <<<<<< < <<<< 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아래 [표 1]과 같이 >>>>>>>(주)와 2022. 1. 6.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2022년도 <<<<<< < <<<< 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현황

(단위 : 천 원)

입찰공고일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용역기간	비고
2021. 12. 21.	2022. 1. 6.	114,040	>>>>>>>(주)	2022. 1. 7. ~ 12.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559호,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㉞과, ㉟과  
내 용

포항시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 제15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2019. 10. 24.)」 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구분하고 있고,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이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2019. 10. 24.)」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신인도 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sup>17)</sup>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sup>18)</su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가점(0.06~0.09점<sup>19)</sup>)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페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위 신인도 규정에 따라 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인증은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외 다른 폐기물이 있거나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가 아닌 경우, 순환골재 자체 원료에 대한 인증은 가점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했다.

### 1. 포항시 ㉞과의 경우

포항시 ㉞과에서는 ‘★.★ 지진피해 위험건축물(㉞동)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 중 신인도에 따른 가점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 또는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제품).
2.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등의 제품 또는 50% 미만 사용한 제품 중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제품)
- 18)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4. 「산업화표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 19) 1.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 +0.09점
2.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용역 : +0.06점

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인증이 아닌 골재 및 미분말(순환골재)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도 부적정한 가점(0.06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94.96점으로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업체와 2020. 6. 29.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부적정 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낙찰업체	사업기간	계약금액 (계약일)	평가결과		가점(0.06점) 불인정 인증서	비고
				심사 평점	정당 평점		
★.★ 지진피해 위험건축물 (화재 위험)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 산업(주)	'20.6.30. ~ '20.12.25.	135,181 (2020.6.29.)	95.02	94.96	환경표지 인증서 (골재 및 미분말)	적격 통과 점수 (95점)

※ 입찰 참여 : 60개 업체

## 2. 포함시 ○○○○○○과의 경우

포항시 ○○○○○○과에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의 건설폐기물 처리대상이 '페콘크리트(7,471톤), 페아스콘(6,219톤), 폐재류(56톤)' 처리·운반으로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sup>20</sup>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환경표지 인증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페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가 아니므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적정한 가점(0.09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94.97점으로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업체와 2021. 2. 17.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부적정 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낙찰업체	사업기간	계약금액 (계약일)	평가결과		가점(0.09점) 불인정 인증서	비고
				심사 평점	정당 평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운반 용역	○○○건설 (주)	'21.2.17. ~ '22.12.8.	314,467 (2021.2.17.)	95.06	94.97	환경표지 인증서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적격 통과 점수 (95점)

※ 입찰 참여 : 63개 업체

### 조치할 사항 포함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르면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처리 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페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현업공무원 지정 및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는 현업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와 그에 따른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 현업공무원 지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54호)에 따르면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의 지정요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예규에 따르면 기관별로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을 수립하고 각 기관장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현업공무원의 지정·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연 1회 이상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업공무원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 즉각 조치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해 ■■■■■과를 포함한 3개 부서가 아래 [표 1]과 같이 현업공무원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부적정 운영되었고, 현업공무원이 최소한의 인원 이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표 1] 현업공무원 부서 부적정 운영 현황

부서	현업부서 지정사유	부적정 운영현황	비고
■■■■■과	토·공휴일 뿔뿔뿔뿔관 근무	주말 정기적 근무 미실행	[붙임1] 참고
ㄱㄱㄱㄱㄱ ㄱㄱ센터	토·공휴일 꺾꺾꺾꺾꺾관 근무	비현업부서인 솔솔솔솔과(現 설설설설과) 직원 포함하여 주말 당직 근무 운영	[붙임2] 참고
ㄷㄷㄷㄷㄷ ㄷㄷ과 ㄱㄱ팀	토·공휴일 3개 ㄷㄷㄷㄷ사업소 운영(뿔부·살부·뿔부)	2022년 3월 개소한 ㄷ부 ㄷㄷㄷㄷ사업소는 추가적 현업공무원 지정 절차 없이 운영 ㄱㄱ팀 팀장은 주말 당직 근무 미실행에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	

※ 포항시 제출자료 및 인사량시스템 재구성

### 2. 현업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지정해제 등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54호)에 따르면, 현업 공무원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직무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운영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및 제5항,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

공무원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의 상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평일 근무에 대한 1시간 공제 역시 적용받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의 책정방식이 일반대상자와 다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업공무원이 인사이동 등에 따라 비현업 일반대상자로 변경되어 현업공무원 지정요건에서 벗어나면 그 즉시 현업공무원 지정을 초과근무시스템(인사랑시스템) 상에서 해제하고 일반대상자 규정을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을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포항시 ○○○○○과에서는 인사이동에 따라 현업에서 일반대상자로 변동된 공무원에 대한 현업대상 해제를 누락하였고, 아래 [표 2]와 같이 4명의 공무원이 현업이 아님에도 계속 현업 방식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산정되어 월 57시간 상한 및 1일 1시간의 공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으로 총 71시간, 770,201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오지급 되었다.

이로 인해 현업공무원의 관리 부적정으로 인해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현업부서가 운영되었고 인사이동에 따른 지정해제 업무 소홀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오지급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현업공무원 및 현업부서 운영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은 연 1회 이상 점검 후 지정해제 및 사후관리계획 작성 등 적의 조치하시고, 오지급 된 시간외근무수당 770,201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표 2] 시간외근무수당 오지급 내역**

(단위 : 시간, 원)

현 부서 (이전부서)	직 급	성 명	근 무 월	시간외근무수당			과지금액	비 고
				실제지급 시 간	적정지급 시 간	오 지 급 시 간		
합계		4명		587	516	71	770,201	
AAA과 (***과 /현업부서)	지방==	aaa	2022. 7.	67	59	8	98,568	2022.7.7. 현 부서 발령
AAA과 (==과 /현업부서)	지방^^^	bbb	2023. 1.	37	35	2	25,062	2023.1.4. 현 부서 발령
AAA과 (==과 /현업부서)	지방...	ccc	2022. 10.	67	64	40	383,420	2022.10.18. 현 부서 발령
			2022. 11.	43	39			
			2022. 12.	10	14			
			2023. 1.	39	30			
			2023. 2.	48	36			
			2023. 3.	33	27			
			2023. 4.	50	39			
			2023. 5.	60	51			
AAA과 (***과 /현업부서)	지방\$\$\$\$	ddd	2023. 7.	77	66	21	263,151	2023.7.5. 현 부서 발령
			2023. 8.	56	46			

※ 포항시 제출자료 및 인사랑시스템 계구성

[붙임 1] [ ] 과 소관 현업공무원의 토요일·공휴일 근무내역

부서	성명	근무시기	근무횟수	세부근무내역(근무일자 및 출퇴근시간)
\ \ \ \ 과	lll	2022. 2.	4회	2022-02-05(12:20~15:55)
				2022-02-12(13:36~17:39)
				2022-02-13(15:05~17:39)
\ \ \ \ 과	lll	2022. 3.	2회	2022-02-27(15:12~19:26)
				2022-03-19(14:18~18:08)
				2022-03-20(09:44~14:42)
\ \ \ \ 과	lll	2022. 4.	0회	
\ \ \ \ 과	lll	2022. 5.	1회	2022-05-08(13:43~16:49)
\ \ \ \ 과	lll	2022. 6.	1회	2022-06-06(11:52~18:18)
\ \ \ \ 과	lll	2022. 7.	3회	2022-07-17(14:19~18:19)
				2022-07-30(15:59~19:29)
				2022-07-31(09:33~13:33)
\ \ \ \ 과	sss	2022. 8.	0회	
\ \ \ \ 과	sss	2022. 9.	2회	2022-09-12(14:56~20:12)
				2022-09-25(18:56~22:12)
\ \ \ \ 과	aaa	2022. 10.	1회	2022-10-29(15:40~18:24)
\ \ \ \ 과	aaa	2022. 11.	4회	2022-11-13(11:47~16:17)
				2022-11-19(08:49~12:01)
				2022-11-26(14:01~19:17)
				2022-11-27(14:25~19:27)
\ \ \ \ 과	aaa	2022. 12.	5회	2022-12-03(10:13~16:10)
				2022-12-10(15:01~19:03)
				2022-12-18(13:38~17:53)
				2022-12-24(12:35~17:11)
				2022-12-25(13:45~17:46)
[ ] 과	aaa	2023. 1.	4회	2023-01-07(12:58~17:59)
				2023-01-15(12:20~19:36)
				2023-01-28(14:21~15:49)
				2023-01-29(15:10~18:02)
[ ] 과	aaa	2023. 2.	3회	2023-02-11(13:01~17:06)
				2023-02-18(19:45~21:33)
				2023-02-26(13:05~17:35)
[ ] 과	aaa	2023. 3.	0회	
[ ] 과	aaa	2023. 4.	2회	2023-04-22(12:12~17:58)
				2023-04-23(09:14~14:35)
[ ] 과	aaa	2023. 5.	4회	2023-05-13(09:54~18:28)
				2023-05-14(13:43~17:51)
				2023-05-20(12:25~17:53)
				2023-05-21(12:28~16:31)
[ ] 과	aaa	2023. 6.	0회	
[ ] 과	aaa	2023. 7.	2회	2023-07-01(15:58~22:58)
				2023-07-22(11:48~15:05)
[ ] 과	aaa	2023. 8.	1회	2023-08-27(16:44~20:48)

[붙임 2] [ ] 관 소관 토요일·공휴일 근무자 명단 및 근무순서

연번	직급	성명	부서	현업여부	연번	직급	성명	부서	현업여부
1	* * * * * 9급	qqq	ㄱㄱㄱㄱㄱ ㄱㄱ센터	현업	18	* * * * * 7급	999	ㄱㄱㄱㄱㄱ ㄱㄱ센터	현업
2	* * * * * 8급	www	실실실실과	비현업	19	* * * * * 9급	333	ㄱㄱㄱㄱㄱ ㄱㄱ센터	현업
3	* * * * * 6급	eee	실실실실과	비현업	20	* * * * * 6급	222	실실실실과	비현업
4	* * * * * 6급	rrr	ㄱㄱㄱㄱㄱ ㄱㄱ센터	현업	21	* * * * * 9급	111	실실실실과	비현업
5	* * * * * 7급	ttt	실실실실과	비현업	22	* * * * * 6급	???	ㄱㄱㄱㄱㄱ ㄱㄱ센터	현업
6	* * * * * 7급	yyy	실실실실과	비현업	23	* * * * * 6급	///	실실실실과	비현업
7 <small>*6월부터 시작</small>	* * * * * 8급	uuu	실실실실과	비현업	24	* * * * * 8급	...	실실실실과	비현업
8	* * * * * 7급	iii	ㄱㄱㄱㄱㄱ ㄱㄱ센터	현업	25	* * * * * 9급	,,,	ㄱㄱㄱㄱㄱ ㄱㄱ센터	현업
9	* * * * * 6급	ooo	실실실실과	비현업	26 <small>*8월부터 시작</small>	* * * * * 6급	mmm	실실실실과	비현업
10	* * * * * 8급	ppp	실실실실과	비현업	27	* * * * * 7급	nnn	실실실실과	비현업
11	* * * * * 9급	aaa	실실실실과	비현업	28	* * * * * * * * * * 사	bbb	ㄱㄱㄱㄱㄱ ㄱㄱ센터	현업
12	* * * * * 8급	sss	ㄱㄱㄱㄱㄱ ㄱㄱ센터	현업	29	* * * * * 9급	vvv	실실실실과	비현업
13	* * * * * 8급	ddd	실실실실과	비현업	30	* * * * * 7급	ccc	실실실실과	비현업
14	* * * * * 9급	fff	실실실실과	비현업	31	* * * * * 9급	xxx	ㄱㄱㄱㄱㄱ ㄱㄱ센터	현업
15 <small>*7월부터 시작</small>	* * * * * 9급	ggg	ㄱㄱㄱㄱㄱ ㄱㄱ센터	현업	32	* * * * * 9급	zzz	실실실실과	비현업
16	* * * * * 6급	hhh	실실실실과	비현업	33	* * * * * 7급	lll	실실실실과	비현업
17	* * * * * 6급	jjj	실실실실과	비현업	34	* * * * * 6급	kkk	실실실실과	비현업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불법 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등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구 ☒☒과  
**내 용**

포항시 ☒구 ☒☒과에서는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산림 훼손지에 대한 재해방지 조치나 복구 명령,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비 예치, 준공 검사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복구 대집행 등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 및 토석채취허가·신고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 철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으며,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자가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sup>21)</sup>를,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sup>22)</sup>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sup>23)</sup>를 각각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의무자는 복구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한 자에게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복구의무자로부터 복구설계서 제출 및 승인, 복구비 예치, 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 행정절차에 따라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설계서를 30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복구의무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포항시 ☒구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포항시 ☒구 **11**면 **44**리 산53-1 등 5건의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복구명령 미조치, 복구설계서 미제출, 과태료 미부과, 복구비 미예치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불법산지전용지 사후관리 부적정 내역**

연번	불법산지전용 내역				조치사항						비고	
	불법전용지	피해 발생일 (사건번호)	피해 면적 (㎡)	행위자	복구 명령 여부	복구 설계서 제출 여부	과태료 <sup>24)</sup> 부과 여부	복구비 예치 <sup>25)</sup> 여부	복구 여부	준공 검사 여부		하자 보증금 예치 <sup>26)</sup> 여부
1	11면 44리 산53-1 외 1필	'20.10.15. (2020-10)	2,740	ttt	여 (3회)	여	부	여	부	부	부	복구비 예치기간 경과
2	11면 44리 산77 외	'21.8.추정 (묘밭)	21,136	yy 산업 uuu	여 (2회)	부	부	부	부	부	부	
3	11면 44리 산20-4 외 2필	'21.03.15. (2021-4)	1,870	iii	여	여	부	여	여	여	해당없음	복구이후 하자발생
4	11면 44리 산20-1 외 7필	'21.10.27. (묘밭)	21,528	ooo	부	부	부	부	부	부	부	
5	≥ 11면 44리 산13	'22.2.16.	674	포항시 pp pp	여 (2회)	부	부	부	부	부	부	

※ 포항시 제출자료 재구성

21)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토석채취허가·신고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 면제)  
 22)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제42조(복구준공검사)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함

24)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5) 복구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면제  
 26)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비의 4%에 해당하는 금액(1백만 원 미만 인 경우 면제)

또한 감사 기간 중 현장 확인(2023. 9. 13.) 결과 불법 산지전용지 5건 중 4건은 복구가 되지 않았으며, 1건은 하자가 발생(식재수목 전량 고사) 하는 등 아래 [사진]과 같이 경작지, 닭 사육장, 승마장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그 결과 불법으로 훼손된 5건의 산지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복구가 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미부과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교육관리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00000과  
 내 용

포항시 00000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무자격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 관련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정을 마친 자, 위생사·식품제조기사·영양사,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약학·식품가공학 등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 2016. 10. 4.) 제4조 제2항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7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00000과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시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선정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020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최종선정 결과보고<sup>27)</sup>”로 ‘AAA’ 등 8명을 선정하고, 2022년 모집 시에는 ‘BBB’ 등 9명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 최종선정 결과보고<sup>28)</sup>”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AAA’ 등 17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으로 총 101,400천 원(2020년 34,050천 원, 2021년 44,500천 원, 2022년 13,050천 원, 2023년 9,800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부적합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선정 및 활동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합계			101,400	34,050	44,500	13,050	9,800	
1	AAA	0000.00.00	12,450	5,800	6,650			2020년 위촉
2	CCC	0000.00.00	9,400	3,200	4,300	1,900		"
3	DDD	0000.00.00	7,600	4,550	3,050			"
4	EEE	0000.00.00	8,600	3,850	4,750			"
5	FFF	0000.00.00	11,650	4,700	6,950			"
6	GGG	0000.00.00	10,950	2,850	5,400	2,700		"
7	KKK	0000.00.00	13,650	4,550	7,000	2,100		"
8	LLL	0000.00.00	13,200	4,550	6,400	2,250		"
1	BBB	0000.00.00	3,050			1,250	1,800	2022년 위촉
2	SSS	0000.00.00	200			200		"
3	ZZZ	0000.00.00						"
4	XXX	0000.00.00	2,700			1,300	1,400	"
5	VVV	0000.00.00	1,400				1,400	"
6	UUU	0000.00.00	2,700			1,350	1,350	"
7	YYY	0000.00.00	1,250				1,250	"
8	III	0000.00.00	1,250				1,250	"
9	OOO	0000.00.00	1,350				1,350	"

27) ■■■과-4284(2020. 5. 20.)호

28) ○○○○과-4940(2022. 5. 31.)호

##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관리 부적정

「식품위생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한 시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반기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등 교육내용에 대하여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 연간 교육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실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교육내용 및 일정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3조 제4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일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반기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교육내용 및 일정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2020. 6. 2., 2022. 6. 14. 2회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일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표 2] 연간 교육계획 수립·실시 현황 등

구분	2020	2021	2022	2023	비고
연간 교육계획 수립	부	부	부	부	
반기 교육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교육내용 및 일정 통지	부	부	부	부	
홈페이지 공개	부	부	부	부	

그 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 활동하여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문화예술 활동지원 운영경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다음 [표 1]과 같이 ‘문화예술 활동지원 운영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문화예술 활동지원 운영경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천 원)	주요내용	비고
문화예술 활동지원 운영경비 지원	(사)██████	연 75,000	단체 운영비 지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 1.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의 업무추진비의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개인적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운영경비 지원사업'의 정산보고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목적에 어긋나는 집행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및 개선 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778,730원의 보조금을 다음 [표 2]와 같이 보조사업과 무관한 (사)○○○○

(CCC 및 DDD)<sup>29)</sup>의 개인차량의 주유비로 사용한 내역을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시정 및 개선명령을 하지 않았다.

[표 2] 업무추진비 중 개인차량 주유비 사용 현황

해당연도	사용기간	사용현황	사용금액(원)	비고
합계		33건	1,778,730	-
2020년	1.15. ~ 7.10.	9건	434,000	업무 목적 외 ○○○(CCC)의 개인차량에 주유
2021년	1.20. ~ 11.04.	12건	634,730	
2022년	1.15. ~ 8.14.	10건	590,000	
2023년 (6월까지)	1.26. ~ 4.11.	2건	120,000	업무 목적 외 ○○○(CCC, DDD)의 개인차량에 주유

그 결과 1,778,730원의 보조금이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예술활동 지원이라는 당초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등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 2. 보조금 집행절차 확인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별표11]에 업무추진비의 성질별 분류에는 업무추진비의 월정액 지급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29) CCC의 임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정기총회 당선자 인준일까지이며, 2023년 3월 1일부터 DDD이 ○○○ 권한대행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각각의 지출 건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고,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한 후 사용하여야 했다.

또한 포항시 ㉔㉔㉔㉔과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운영경비 지원사업’의 정산보고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 720만 원(월 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한 지출결의서의 작성 여부, 집행 목적 및 집행 대상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 시정 및 개선 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다음 [표 3]과 같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매월 60만 원씩 일괄 지출 품의하여 보조사업자 명의의 통장(농협 ㉔㉔㉔-㉔㉔㉔㉔-㉔㉔㉔㉔-㉔㉔)에 이체하면, 보조사업자의 대표가 ‘㉔㉔ ㉔㉔㉔ ㉔㉔㉔㉔㉔㉔㉔㉔㉔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한 개별 지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출 품의 및 결의를 누락 하였으며,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보조사업자의 정산 보고에 대해 별도의 조치 및 시정·개선명령을 하지 않았다.

[표 3] 지출절차를 누락하고 사용한 업무추진비 현황

구 분	지출건수(건)	예산현황(원)	비고
합 계	786	25,200,000	-
2020년	255	7,200,000	지출건수는 보조사업자 명의의 통장(농협 / ㉔㉔㉔-㉔㉔㉔㉔-㉔㉔㉔㉔-㉔㉔)으로 지급된 ㉔㉔(CCC)의 출장비가 포함된 건수
2021년	219	7,200,000	
2022년	225	7,200,000	
2023년(6월까지)	87	3,600,000	

그 결과 786건, 총 25,200,000원의 보조금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출되는 등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3. 보조금 출장비 지급 확인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그 중 여비와 관련해서는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활동지원 운영경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여비를 지출할 때 실제로 출장을 한 자에게 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야 했고, 포항시 ㉔㉔㉔㉔과에서는 정산보고에 대해 당시 여비가 실제로 출장한 자에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어긋나는 내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다음 [표 4]와 같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㉔㉔ ‘CCC’가 실제 출장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아야 할 출장비를 ‘CCC’가 아닌 ‘(사)㉔㉔㉔㉔’의 계좌(업무추진비 계좌)로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표 4] 실제 출장자가 아닌 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내역

해당연도	지급현황	지급금액(원)	실제 출장자	출장비 수령자
합계	28건	2,351,400	-	-
2020년	8건	651,400	CCC	(사)㉔㉔㉔㉔
2021년	8건	580,800		
2022년	10건	865,200		
2023년(6월까지)	2건	254,000		

그 결과 28건, 총 2,351,400원의 보조금 출장비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지 않는 등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목적 외로 사용된 사업비 1,778,730원은 회수하시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붙임 1] 2020~2023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한 주유 내역**

연번	일 자	적 요	사용금액(원)	비 고
1	2020.01.15.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2	2020.02.20.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3	2020.03.11.	-----	40,000	☒(CCC) 개인차량 주유
4	2020.03.14.	-----	60,000	☒(CCC) 개인차량 주유
5	2020.04.05.	-----	44,000	☒(CCC) 개인차량 주유
6	2020.04.25.	-----	40,000	☒(CCC) 개인차량 주유
7	2020.04.26.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8	2020.05.29.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9	2020.07.10.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10	2021.01.20.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11	2021.02.15.	-----	62,000	☒(CCC) 개인차량 주유
12	2021.02.23.	-----	60,000	☒(CCC) 개인차량 주유
13	2021.03.12.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14	2021.03.20.	-----	69,000	☒(CCC) 개인차량 주유
15	2021.03.30.	-----	26,730	☒(CCC) 개인차량 주유
16	2021.04.14.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17	2021.04.24.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18	2021.05.02.	-----	60,000	☒(CCC) 개인차량 주유
19	2021.07.07.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20	2021.08.11.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21	2021.11.04.	-----	57,000	☒(CCC) 개인차량 주유
22	2022.01.15.	-----	80,000	☒(CCC) 개인차량 주유
23	2022.02.13.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24	2022.02.21.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25	2022.04.21.	-----	60,000	☒(CCC) 개인차량 주유
26	2022.05.04.	-----	70,000	☒(CCC) 개인차량 주유
27	2022.05.14.	-----	60,000	☒(CCC) 개인차량 주유
28	2022.05.25.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29	2022.08.01.	-----	70,000	☒(CCC) 개인차량 주유
30	2022.08.05.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31	2022.08.14.	-----	50,000	☒(CCC) 개인차량 주유
32	2023.01.26.	-----	70,000	☒(CCC) 개인차량 주유
33	2023.04.11.	-----	50,000	☒(DDD) 개인차량 주유

[붙임 2] 2020~2023 출장자가 아닌 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내역

연번	출장일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비(원)	지급일	지급처(채주)
1	2020.02.13.	CCC	WW	-----	117,200	2020.02.19.	(사) [가]
2	2020.05.27.	CCC	WW,WW	-----	65,400	2020.05.27.	(사) [가]
3	2020.06.29.	CCC	WW	-----	55,800	2020.06.29.	(사) [가]
4	2020.07.03.	CCC	WW	-----	125,000	2020.07.09.	(사) [가]
5	2020.07.14.	CCC	WW	-----	77,400	2020.07.14.	(사) [가]
6	2020.07.24.	CCC	WW	-----	69,000	2020.07.27.	(사) [가]
7	2020.08.20.	CCC	WW	-----	72,600	2020.08.31.	(사) [가]
8	2020.07.23.	CCC	WW	-----	69,000	2020.09.21.	(사) [가]
9	2021.03.02.	CCC	WW	-----	72,600	2021.03.02.	(사) [가]
10	2021.04.17.	CCC	WW	-----	96,200	2021.04.21.	(사) [가]
11	2021.04.21.	CCC	WW	-----	61,000	2021.04.27.	(사) [가]
12	2021.05.08.	CCC	WW	-----	96,200	2021.05.11.	(사) [가]
13	2021.09.01.	CCC	WW	-----	70,600	2021.09.07.	(사) [가]
14	2021.10.06.	CCC	WW	-----	50,800	2021.10.18.	(사) [가]
15	2021.10.15.	CCC	WW	-----	61,600	2021.10.18.	(사) [가]
16	2021.11.09.	CCC	WW	-----	71,800	2021.11.12.	(사) [가]
17	2022.02.15.	CCC	WW	-----	72,600	2022.02.16.	(사) [가]
18	2022.02.23.	CCC	WW	-----	72,600	2022.03.02.	(사) [가]
19	2022.03.23.	CCC	WW	-----	72,600	2022.03.24.	(사) [가]
20	2022.04.28.	CCC	WW	-----	55,800	2022.05.25.	(사) [가]
21	2022.07.12.	CCC	WW	-----	226,200	2022.07.25.	(사) [가]
	2022.07.19.	CCC	WW	-----			
22	2022.09.02.	CCC	WW	-----	71,400	2022.09.14.	(사) [가]
23	2022.09.23.	CCC	WW	-----	73,000	2022.10.11.	(사) [가]
24	2022.10.24.	CCC	WW	-----	72,600	2022.10.24.	(사) [가]
25	2022.11.23.	CCC	WW	-----	74,200	2022.11.28.	(사) [가]
26	2022.12.20.	CCC	WW	-----	74,200	2022.12.26.	(사) [가]
27	2023.02.09.	CCC	WW	-----	74,200	2023.02.13.	(사) [가]
28	2023.02.21.	CCC	WW	-----	179,800	2023.02.28.	(사) [가]
	2023.02.23.	CCC	WW	-----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의료급여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다.

### 1.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상실 관리 소홀

「의료급여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수급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고,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 소득·재산 증가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상실 통보서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권자의 취득, 변경, 상실 등의 변경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연 통보 시 의료급여·건강보험 간 정산, 급여비용 착오

지급, 수급권 자격 확인 업무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취득·변경·상실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취득, 변경,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종별 변경 대상자에게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년 1월부터 2023. 9. 22.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7,835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 초과 등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전산처리를 지연하는 등 제때 처리하지 않았고, 최대 1,392일(3년 8개월)까지 자격상실 처리를 지연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업무를 방치 하였다.

[표 1] 의료급여 자격상실 처리 지연 현황

연 도	의료급여 수급권 지연처리 인원	지연일수	지연사유	비 고
계	7,835명			
2019년	P P 등 1,741명	최대 264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소득인정액 초과, 연령초과 등
2020년	EEE 등 1,564명	최대 388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2021년	RRR 등 1,753명	최대 906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2022년	TTT 등 1,584명	최대 1,124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2023년	YYY 등 1,193명	최대 1,392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 포항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소득인정액 초과, 취업 등 의료급여 자격 중지(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ZZZ 등 638명의 의료급여 상실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 3,989회에 이르는 의료급여 진료가 이루어져 247,350천 원의 진료비용을 의료급여특별 회계에서 의료급여로 부담하였다.

[표 2] 의료급여 자격상실 지연처리로 인한 의료급여 기금부담액 등 현황

연 도	성 명	진료횟수(회)	기관부담액(원)	비 고
계	ZZZ 등 638명	3,989	247,350,217	
2019년	ZZZ 등 131명	463	26,870,869	
2020년	DDD 등 118명	433	27,347,030	
2021년	FFF 등 154명	609	37,899,528	
2022년	GGG 등 133명	1,476	104,387,670	
2023년	HHH 등 102명	1,008	50,845,120	

※ 포항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변경 소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제1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원의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1종 자격이 부여된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증 발급’에 따르면 1종에서 2종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자 자격이 변동 된 경우 기존 의료급여증을 지체없이 회수하고 변경된 내용에 맞게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의료급여 2종 수급자 NNN 등 2명이 65세 연령도래로 의료급여 종별을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실제 처리일자 기준으로 최대 560일 지연처리 하였고 그에 따라 환급금액 621,020원이 발생하였다.

[표 3] 의료급여 연령도래자 종별변경 처리 지연 현황

(단위 : 원)

대 상 자			종 별 변 경				처리 지연일	환 급 발생금액
성명	생년월일	선정일자	선정시 종별	적정 종별	사유	실제처리 일 자		
계	2명						621,020	
KKK	—.—.—.	2020.04.01.	2종	1종	연령도래	2021.10.13	560일	62,180
LLL	—.—.—.	2021.07.01.	2종	1종	연령도래	2022.05.03.	306일	558,840

※ 포항시 제출자료 재구성

### 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제19조,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라 시장·군수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구상금), 납부하지 않을 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강제 집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 및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만료 6개월 내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수급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부당이득금’ 과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때 발생한 ‘구상금’ 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고, 납부대상자가 미납부 시 채권보전 조치(재산조회, 독촉, 압류 등)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2. 5. 23. ~ 2022. 6. 7.에 실시한 포항시 자체감사(수감기간 : 2019. 4월 ~ 2022. 5월)에서 부당이득금·구상금에 대한 환수결정을 하지 않거나, 환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급여비용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래 [표 4]와 같이 2022. 5월 이후부터 부과된 부당이득금(34건, 7,659,980원)과 구상금(4건, 36,766,000원) 총 38건(44,425,980원)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4] 미회수 부당이득금·구상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채무자(건 수)	부과일	부과액	징수액	잔 액	채권보전 조 치
계	GGGG 등 38건		44,425,980		44,425,980	
부당이득금	GGGG 등 34건	2022-09-09 등 34건	7,659,980	-	7,659,980	-
구상금	HHHHHHHHH (주) 등 4건	2022-09-17 등 4건	36,766,000	-	36,766,000	-

※ 포항시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해 의료급여·건강보험 간 정산, 급여비용 착오 지급, 수급권 자격 확인 업무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고, 의료급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의료급여 종별 미처리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 621,020원을 해당 대상자에게 환급하시기 바라며,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3조에 따라 부당이득금·구상금 체납액(44,425,980원)을 조속히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전용허가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관내 농지에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민원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sup>30)</sup>를 요청받아 「농지법」에 따른 전용요건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하는 등으로 농지전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시장·군수<sup>31)</sup>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를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용제한면적 1,000㎡를 초과한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필지의 농지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겹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33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결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sup>32)</sup> 연결하여 전용한 농지를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고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하는 농지업무편람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농지를 동일 또는 유사한 건축물 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각각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는 1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면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르면 농지전용을 허가할 때 새울행정시스템에 농지전용 신청자의 인적사항, 농지소재지, 전용목적 및 면적 등을 포함한 허가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므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이름 또는 해당 농지의 지번을 조회하면 과거 농지전용허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받은 때에는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해 동일인이 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연결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해당하거나 다수인이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동일 필지를 각각 농지전용 신청한 면적을 확인하여 전용하려는 면적이 전용제한면적(1,000㎡)을 초과할 경우 농지전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전용제한면적을 초과하여 농지를 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 복합민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민원을 접수받아 농지전용허가를 협의하는 것을 의미

31) 「농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0,000㎡ 미만의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 및 협의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함

32) 농지전용허가일 경우는 전용목적 사업 완료일, 변경허가일 경우에는 변경허가 목적 완료일, 용도변경일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일을 기준으로 농지가 전용된 면적을 합산

**【표】 농지전용허가 부적정 명세**

(단위 : m<sup>2</sup>)

연번	소재지	지번	필지면적	전용면적	농지구분	협의일자	신청인	비 고
1	읍읍면 라라리	720-3	900	900	생산관리	2022.3.25.	ㅅㅅㅅ	동일인
		720-4	578	300		2022.3.25.	ㅅㅅㅅ	
	소계			1,200	-	-	-	
	부적정 내용 : 연결 필지를 합한 전용면적이 제한면적(1,000m <sup>2</sup> )을 초과							
2	읍읍면 라라리	1612-10	2,283	430	생산관리	2023.6.2.	ㄴㄴㄴ	2인 이상 동일 필지 전용
				463		2023.6.2.	ㄷㄷㄷ	
				430		2023.5.30.	ㄹㄹㄹ	
	소계			1,323	-	-	-	
	부적정 내용 : 다수인이 동일 필지를 전용한 면적이 제한면적(1,000m <sup>2</sup> )을 초과							

읍읍면 라라리 720-3번지 외 1필지는 모두 동일인 ‘ㅅㅅㅅ’가 연결한 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면적의 합이 1,200m<sup>2</sup>로서 농지전용 제한면적<sup>33)</sup>(1,000m<sup>2</sup>)을 초과하는데도 농지전용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읍읍면 라라리 1612-10번지는 동일 필지에 ‘ㄴㄴㄴ’ 등 3명이 농지전용 신청한 면적을 합하면 1,323m<sup>2</sup>로 전용제한면적(1,000m<sup>2</sup>)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부지로 허가하였다.

그 결과 전용제한면적(1,000m<sup>2</sup>)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농지가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3) PP면 OO리 720-3번지는 2개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652m<sup>2</sup>, 계획관리지역에 248m<sup>2</sup>)에 속해 있고, OO리 720-4번지는 2개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225m<sup>2</sup>, 계획관리지역 75m<sup>2</sup>)에 속해 있으나, 2필지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330m<sup>2</sup> 이하이므로 해당 지역은 모두 생산관리지역을 기준으로 제한면적을 적용하여야 하고, 1,000m<sup>2</sup>를 초과한 농지전용은 불가함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숙박시설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2019. 1. 30. ㄱ구 ≫≫≫≫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ㅈㅈ<sup>34)</sup>’가 포항시 ㄱ구 QQ면 EE리 869 외 1필지에 숙박시설(여관)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협의하면서 같은 해 7. 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8. 12.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숙박시설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이므로 농지전용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그런 후 같은 해 10. 31. ‘KKK’으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토지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ㅈㅈ’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된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농지전용 재협의를 접수하여 같은 해 11. 14. 농지전용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포항시 ㄱ구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12. 5. 위 숙박시설을 건축허가하였다.

**【표】 건축허가 내역**

소재지	지목	지적	전용면적	목 적	토지사용승낙자	수허가자
QQ면 EE리 869, 869-3	답	6,486m <sup>2</sup>	1,990m <sup>2</sup>	숙박시설(여관)	농업회사법인 ㅈㅈ	KKK

「농지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4) ‘농업회사법인 ㅈㅈ’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펜션, 숙박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23. 2. 13. 삭제되었음

그리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및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 대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으로 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에 따르면 시장 등은 농업회사법인이 위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배포한 「2017년 농지업무편람」의 “농업법인 소유 농지의 전용목적 취득 관련 질의”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소유 농지를 제3자에게 주택 부지 등 농업경영 이외의 용도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어 농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지법」상 농업법인에 농지 소유를 허용한 취지 및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자’가 ‘KKK’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하고 ‘KKK’이 농지를 전용하여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자’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포항시 ○○○○과에서는 ‘KKK’이 신청한 농지전용협의에 대해 불가 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포항시 ○○○○과에서는 이 건 토지사용승낙서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sup>35)</sup>하였다.

위 부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심사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적합할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금지한 것은 농어업경영체법에서만 정하는 사항으로 이 건 전용허가와와는 별개로서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는 적합하여 동의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17년 농지업무편람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 외 용도로 전용허가를 받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어 농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에 어긋나므로 농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농지전용협의 당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확인하였다면 업무담당자는 농지전용 불가처분을 하였어야 할 사항이므로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결과 농지전용협의가 불가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농지에 부적정한 건축허가<sup>36)</sup>를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주의),
- ②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자’에 대해 같은 법 제20조의3(해산명령)에 따라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5) ○○○○과-19349(2019. 11. 14.)

36) ㉠구 ○○○○과에서는 농지전용 협의 등을 거쳐 2019. 12. 5. 건축허가 하였고, 2021. 6. 24. 건축주를 ‘KKK’에서 ‘YYY(-----)’으로 변경하였는데, ‘YYY’는 농업회사법인 자자의 법인등기등본 열람 결과 2020. 2. 13. 사임한 대표이사로 확인됨

# 경 상 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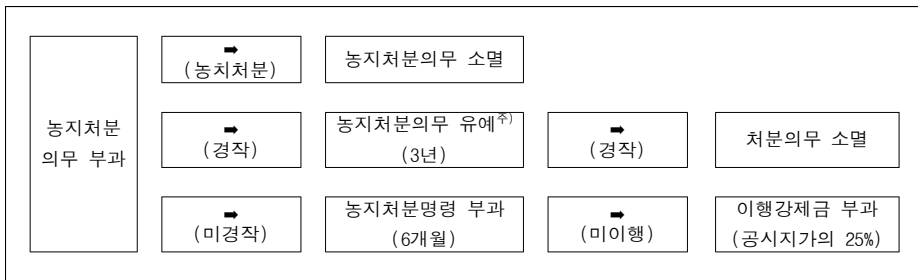
##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농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지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아래 [표 1]과 같이 시장·군수는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농지를 1년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이하 “농지처분의무”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고, 만약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은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농지처분의무 기간(1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농지처분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1] 농지처분의무 부과 이후 업무흐름도



주) 처분의무를 유예받은 후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경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처분명령을 하여야 함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2017 농지업무편람에 따르면 농지처분의무(처분명령 포함)가 부과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

(신고·협의) 신청 시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농지전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그 처분의무 등이 소멸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소매점 등을 건축하기 위해 의제된 농지전용협의 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었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농지전용을 허가하였다.

[표 2] 농지처분의무(농지처분명령 포함) 부과된 농지전용 현황

소재지	면적 (㎡)	소유주	농지처분의무 부과(사유)	처분명령 또는 의무유예	전용협의			건축허가
					일자	신청인	목적	
☐☐☐읍 ☐☐☐리 1147	1,438	MMM	2020.8.12. ~2021.8.11. (휴경)	2021.11.22. ~2022.5.21.	2021.12.2.	MMM	소매점	2022.2.18.
☐☐☐면 ☐☐☐리 324-1	1,044.5	NNN	2017.4.20.~ 2018.4.19. (영농외이용)	2018.4.20. ~2021.4.19.	2018.9.18.	NNN	단독주택	2019.3.18.

그 결과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을 하여야 할 농지에 부적정한 소매점 및 단독주택이 건축허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연번	민박명칭	민박소재지	신고인	신고일자 (수리일자)	신고요건 미충족 내역					신고부서	비고
					면적 초과 (230㎡)	타용도 면적초과	거주요건 미충족	법인 소유	소유권 지분관련		
8	◆◆펜션	-구 ++면 ==길2번길 57	888	'23.6.26. (23.6.30.)			6개월 미만			ㄹ ㄹ면	
9	ㄹㄹㄹㄹ	-구 ==면 ==로 41	999	'22.4.11. (22.4.12.)			3년 미만			ㄹㄹㄹㄹ면	
10	㉿㉿㉿㉿㉿ ㉿㉿㉿㉿	=구 WW면 @@길245번길 33-23	1010 10	'23.9.4.		122.07				ㄹ ㄹ면	
11	ㄱㄱㄱㄱ	=구 &&면 &&로 2932	1111 11	'22.9.30.		1.95				ㄹ ㄹ면	
12	NaNa	=구 ^^면 ^^로 160번길 11	1212 12	'20.9.18. (20.9.19.)			6개월 미만			우우면	
13	ㄷㄷ	=구 ^^면 ^^로 2344번길 13	1313 13	'21.3.10.	43.78					우우면	
14	TelTelTelTelTel	=구 ^^면 ^^로 2344번길 13	1414 14	'21.3.10.	43.78					우우면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석유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ㄹㄹㄹㄹㄹㄹㄹㄹ과(현 ●●●●●●●●과)  
**내 용**

포항시 ㄹㄹㄹㄹㄹㄹㄹ과(현 ●●●●●●●●과)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등에 따라 「석유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행정처분기준” (1. 다 및 2. 라)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을 두고 있으며,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규정된 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본부로부터 석유판매업자의 위반 행위를 통보 받았으나 아래 [표]와 같이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sup>37)</sup>를

위반한 PPP석유(대표 BBB) 등 7개 업체 및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38)를 위반한 SS석유(대표 LLL)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표] 석유사업법 위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미이행 내역**

연번	통보일	업체명	위반사항	적정처분기준	조치여부	비고
1	'20. 2. 18.	PPP석유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사업정지 1개월	부	1회 위반
2	'20. 2. 18.	DD석유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사업정지 1개월	부	1회 위반
3	'20. 2. 18.	OO석유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사업정지 1개월	부	1회 위반
4	'20. 4. 16.	II에너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사업정지 1개월	부	1회 위반
5	'20. 4. 16.	WW에너지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사업정지 3개월	부	2회 위반
6	'20. 8. 31.	SS석유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사업정지 3개월	부	1회 위반
7	'21. 1. 9.	TT석유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사업정지 3개월	부	2회 위반
8	'21. 1. 9.	EE유업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사업정지 1개월	부	1회 위반

※ 포항시 제출자료 계구성

그 결과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가 적정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행정처분의 형평성 및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처분 미이행 건에 대하여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제 목** 주차장법 위반 기계식주차장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 1. 정기검사를 미필하거나 부적합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금지 표지 미부착 관련 과태료 처분 소홀

「주차장법」 제19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하기 전 사용검사를,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일 전후 31일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10에 따르면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도록 되어 있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기계식주차장에 붙이고,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7)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38)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6] “과태료의 부과 기준”(2. 나 및 2. 다)에 따르면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 원,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을 통보받았음에도 아래 [표 1]과 같이 포항시 ★구 ■로 108 등 기계식주차장 7건에 대하여 과태료 총 7,000천 원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정기검사를 미필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소재지	최종 검사일	검사 유효일	적정 과태료	조치여부	비 고
			계	7,000		
1	■로 108(--동)	2018. 9. 6.	2021. 9. 5.	1,000	부	
2	■로 108(--동)	2018. 9. 6.	2021. 9. 5.	1,000	부	
3	ÀÀ로 143(++동)	2018. 11. 20.	2021. 11. 19.	1,000	부	
4	찰찰로 164-1(11동)	2018. 10. 22.	2021. 10. 21.	1,000	부	
5	찰찰로 43(11동)	2017. 12. 19.	2020. 12. 18.	1,000	부	
6	¥¥¥¥4길 21(&&동)	2020. 8. 26.	2022. 8. 25.	1,000	부	
7	∞∞로 75-1(**동)	2020. 7. 21.	2022. 6. 29.	1,000	부	

※ 포항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포항시 ★구 □□로 65 등 기계식주차장 4건에 대해 과태료 총 2,000천 원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2] 부적합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금지 표지 미부착 관련 과태료 미부과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소재지	최종 검사일	검사 유효일	적정 과태료	조치여부	비 고
			계	2,000		
1	□□로 65(11동)	2023. 3. 17.	2023. 6. 16.	500	부	
2	『로 175(--동)	2017. 7. 21.	2017. 7. 21.	500	부	
3	』』로 151(&&동)	2021. 12. 3.	2022. 3. 2.	500	부	
4	◇◇로101번길 10(%%동)	2019. 11. 5.	2020. 2. 4.	500	부	

※ 포항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리인이 보수교육 미수료한 기계식주차장 관련 과태료 처분 소홀

「주차장법」 제19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에 따르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선임하고,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6] “과태료의 부과 기준”(2. 바)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기계식주차장관리인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기계식주차장관리인 보수교육 미수료 명단을 통보받았음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관리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포항시 ★구 ■로 108 등 기계식주차장 23건에 대하여 과태료 총 23,000천 원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3] 관리인이 보수교육 미수료한 기계식주차장 관련 과태료 미부과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소재지	최종 수료일	적정 과태료	조치여부	비 고
		계	23,000		
1	로 108 (--동)	2019. 2. 19.	1,000	부	
2	로 39 (--동)	2017. 1. 12.	1,000	부	
3	로 45 (--동)	2017. 2. 9.	1,000	부	
4	≥≥로 10 (==동)	2016. 12. 1.	1,000	부	
5	≥≥로 213 (##동)	2017. 9. 5.	1,000	부	
6	==로 16 (%동) 외 1필지	2019. 4. 24.	1,000	부	
7	∨∨로 128 (##동)	2018. 3. 20.	1,000	부	
8	로 96 외 1필지	2016. 12. 22.	1,000	부	
9	로101번길 7(^동, vvvvv)	2019. 5. 15.	1,000	부	
10	로 382 (==동)	2019. 4. 9.	1,000	부	
11	로 89 (**동 693)	2017. 1. 12.	1,000	부	
12	로 51 (uu동)	2017. 1. 12.	1,000	부	
13	크로 254 (oo동)	2016. 12. 22.	1,000	부	
14	크로 93 (pp동)	2016. 12. 15.	1,000	부	
15	로 66 (rr동)	2016. 12. 22.	1,000	부	
16	로 55 (ww동)	2016. 12. 22.	1,000	부	
17	로 277(@동 106-2)	2018. 12. 18.	1,000	부	
18	로 201 (@동)	2016. 12. 22.	1,000	부	
19	로 16 (--동)	2016. 12. 15.	1,000	부	
20	로 265 (@동)	2016. 12. 22.	1,000	부	
21	로 301 (@동)	2017. 1. 12.	1,000	부	
22	로 319 (@동)	2017. 1. 12.	1,000	부	
23	로 131 (!!동)	2016. 12. 22.	1,000	부	

※ 포함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적정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주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계식주차장관리인의 보수교육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이 운영되어 사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처분 미이행 건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2020. 5. 6. ≪≪종합건설(주) JJJ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표 1] 공사 현황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백만 원)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 %%	하천 개수 2.2km	10,137	7,746	2,391	2020. 05. 15. ~ 2023. 10. 07.	≪≪종합건설(주) AAA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 %%	실시설계용역 1식	523	523		2017. 03. 30. ~ 2020. 01. 05.	(주)** 외 4개사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1,237	1,237		2020. 05. 08. ~ 2023. 10. 07.	(주)^ 외 1개사	

**1. 하천의 점용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하천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점용목적별 관련 서류(39)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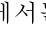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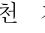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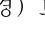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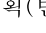
39)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첨부 서류이며, 공작물 신축·개축·변경의 경우 위치도, 수리계산서,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획서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 시설의 설치 여부,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여부 등을 고려<sup>40)</sup>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하천의 명칭,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도지사의 권한 중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의 점용 허가 및 고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의 공작물 중 교량(세월교 포함), 취입보, 하천 복개는 위임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하천에 교량(세월교 포함), 취입보, 하천 복개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지방하천 관리청인 경상북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포항시 과에서는 추진중인 “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 구간 내에 하천관리청인 경상북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 중 하천기본계획 내용(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경상북도 고시 제2017-△△△호, 2017. 8. 28.)과 현재 위 사업으로 시공이 완료된 공작물 설치 현황 및 하천점용허가 완료 여부는 아래 [표 2]와 같다.

40)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서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

[표 2] 하천점용허가 대상 공작물 설치 현황

구 분	하천기본계획			공작물 설치 현황	하천점용허가 여부	비 고
	측점(NO)	명 칭	정비계획			
교 량	0+220.5	] ] 1교	재가설	설치완료	허가완료	
	0+608.5	] ] 2교	재가설	설치완료	허가완료	
취입보 41)	1+495.3	제1취수보	재가설	미설치	미허가	임의삭제
	1+959.4	제2취수보	재가설	설치완료	미허가	규격다름
세월교 42)				신규설치	미허가	임의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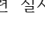


※ 포항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지방하천 관리청인 경상북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인 취입보 2개소<sup>43)</sup>와 세월교 1개소<sup>44)</sup>를 임의로 설치 및 삭제하면서 하천점용허가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하천기본계획에 적합 여부 등을 포함한 하천점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받지 못한 채 공작물이 불법으로 설치 또는 삭제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41) 하천의 수위가 낮을 때 수위를 높여 물을 쉽게 퍼 올릴 수 있도록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한 보  
 42) 하천에 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간이적으로 만든 소규모의 교량  
 43) 하천기본계획상 취입보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1개소만 설치하였으며, 그 중 제1취수보는 임의로 미설치(하천기본계획상 높이 0.8m, 폭 46.1m) 하였고, 설치 완료된 제2취수보도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설물과 다르게(하천기본계획 : 높이 0.8m, 폭 41.4m → 실제 시공 : 높이 1.0m, 폭 58.0m~73.0m) 설치함.  
 44) NO 1+241에 설치된 세월교는 하천기본계획상 없으나, \*\*\* V V V(주로  혼련 실시) 진입을 위하여 임의(폭 5.0m, 길이 43.0m)로 설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회회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구 ◆◆◆◆과**

내 용

포항시 **◆구 ◆◆◆◆과**에서는 포항시 **◆구 ☐☐읍 회회리~♣♣리** 일원 **회회천**의 하폭협소, 하상퇴적 및 노후된 하상구조물 등의 영향으로 주변지역의 침수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개략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공사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건설사업자)	비고
			계	도금액	관금액			
☐☐ 회회천 소하천 정비 사업	총괄	포항시 <b>◆구 ☐☐읍 회회리~♣♣리</b> 하천정비 3.0km 소교량 11개소	11,989	10,170	1,819	2019.01.04. ~ 2024.01.02..	(주) b b b 개발 hhh 외1	50%
	1차	포항시 <b>◆구 ☐☐읍 ♣♣리</b> 하천정비 0.48km 소교량 1개소	1,193	844	349	2019.01.04. 2020.01.03.	(주) b b b 개발 hhh 외1	100%
	2차	포항시 <b>◆구 ☐☐읍 ♣♣리</b> 하천정비 0.07km (비개착복개BOX)	2,052	1,617	435	2020.03.06. ~ 2020.12.31.	(주) b b b 개발 hhh 외1	100%
	3차	포항시 <b>◆구 ☐☐읍 ♣♣리</b> 하천정비 0.35m 소교량 3개소	2,349	2,140	209	2021.01.29. ~ 2021.12.31.	(주) b b b 개발 hhh 외1	100%
	4차	포항시 <b>◆구 ☐☐읍 췌췌리</b> 하천정비 0.54km	1,549	1,153	396	2022.02.21. ~ 2022.12.20.	(주) b b b 개발 hhh 외1	100%
5차	포항시 <b>◆구 ☐☐읍 회회리~췌췌리</b> 하천정비 1.32km 소교량 5개소	3,648	3,028	620	2023.01.04. ~ 2024.01.02.	(주) b b b 개발 hhh 외1	32%	

### 1.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미이행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르면 소하천 관리청(52)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34조 등 16개의 개별법 인가·허가·협의(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공고 또한 한 것으로 본다.

한편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포항시 **◆구 ◆◆◆◆과**에서는 소하천정비공사 시행계획 수립공고(2019. 8. 12.) 하기 전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하지 않은 채 아래 [표 2]와 같이 공사를 시행하는 등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표 2] 농지 불법 전용 내역

구 분	공사시기	불법 전용 농지 내역			사 업 량
		용도지역	소재지	공부면적(㎡)	
1차분	2019.01.04. ~2020.01.03.	농업진흥지역 외	☐☐읍 ♣♣리 416-5, 854-4, 856-5, 856-6, 860-4, 871-11, 846-6	282㎡	회회교 양벽, 배수통관 1개소, 제방도로 성토
4차분	2022.02.21. ~2022.12.20.	농업진흥지역 외	☐☐읍 회회리 463-7, 췌췌리 484-3, 484-2, 489-4, 491-4, ♣♣리 445-5, 444-6, 446-3, 441-2, 442-4, 443-3	2,562㎡	전석쌓기 65㎡ 식생옹벽(type-A) 565㎡ 도로포장 1,372㎡

※ 포항시 제출자료 재구성

52)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하천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고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하는 그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함.

## 2.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sup>53)</sup>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주청은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설사업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발주청인 포항시 **◆구 ◆◆◆◆◆**과에서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3.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변동액 반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3항의 약정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은 아래 [표 3]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53)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및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표 3] 계약금액의 정산항목 및 규정

정산항목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 제8조
환경보전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따라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7개 정산항목은 정산 시 이미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므로 확인된 실적 정산 금액에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포항시 **◆구 ◆◆◆◆◆**과에서는 물가변동액을 반영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상승분 77,050천 원을 정산조치 없이 준공처리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표 4]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영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물가상승분 반영액	정산항목 제외 물가상승분 반영액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영액	비 고
계	1,187,384	1,110,334	77,050	
1 회	299,761	281,445	18,316	
2 회	238,966	221,736	17,230	
3 회	185,833	171,725	14,108	
4 회	162,871	152,625	10,246	
5 회	152,873	144,088	8,785	
6 회	147,080	138,715	8,365	

※ 포항시 제출자료 재구성

4. 공사비 과다계상 등 공사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같은 지침 제118조에 따라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제출하는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등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역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포항시 1구 11과에서는 공사 시행 과정에 발생한 토사 운반에 대해 아래 [표 5]와 같이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142,354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해 감액하지 않고 있다.

[표 5] 사토 운반거리 미정산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수 량 (㎡)	운반거리(km)			금 액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증·감	
계	11,455				230,649	88,295	감142,354	
1차분	3,317	10	4.08	감5.92	66,788	25,348	41,440	
3차분	3,880	10	4.85	감5.15	78,125	27,806	50,319	
4차분	4,258	10	7.85	감2.15	85,736	35,141	50,595	

※ 포항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농지전용 미협의 및 안전관리 업무 소홀사항은 「농지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고, 미정산 및 과다 계상된 사업비 219,404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포항시 ㉠구 ㉠㉠면 일원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수를 전량 차집하여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개략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공사(용역)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용역명)	위 치	사 업 량	공사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건설사업자)	비고
			계	도금액	관금액			
㉠㉠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포항시 ㉠구 ㉠㉠면 ㉠㉠리 718-4	Q=800톤/일 토목,기계,조경 공사 1식	5,833	3,641	2,192	2022.08.16. ~ 2025.08.14.	EE건설(주)	22%
㉠㉠ 하수관로 정비사업	포항시 ㉠구 ㉠㉠면 일원	오수관로부설 31.8km 배수설비1,027기	22,414	15,850	6,564	2022.08.16. ~ 2025.08.14.	㈜RR건설 외 1	19%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포항시 ㉠구 ㉠㉠면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2,408	2,408	-	2022.04.06. ~ 2025.08.04.	㈜AAAA공단 BBB 외 3	20%

### 1.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현장 관리 부적정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sup>54</sup>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영 제44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한편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지반조성 공사면적 1,000㎡이상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이에 건설사업자는 2022. 10. 19. 포항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상기 법령에 따라 배출공정(야적, 수송, 신기 및 내리기 등)에 적합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사현장 확인결과 포항시 ㉠㉠㉠과에서는 지난 2. 9.부터 터파기한 토사(6,610㎡)를 현장 내 야적하였으나 아래 [사진 1]과 같이 감사일 현재(9. 14.)까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에 따른 지역주민 및 작업자의 건강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아래 [사진 2]와 같이 작업자들의 이동통로를 마련하지 않아 이동간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건설기술인 등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4)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 [사진 1] [사진 2]


또한 당초 설계내역 및 시공계획서에는 가적치장(거리 100m)으로 토사를 운반한 후 되메우기 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 내 토사를 야적하거나 일부를 지반조성에 사용하였음에도 건설기술인 등은 감사일 현재까지 운반거리에 대한 설계 및 시공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sup>55)</sup>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여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매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직접구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포장복구 후 차선도색에 대한 재료비(페인트 등)가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데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구입하여 중소기업자 다수의 입찰참가

55)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기회를 제한하여 관급자재로 구매보다 사업비 15,580천 원<sup>56)</sup>이 추가 지출되는 등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 3. 공사비 과다계상 등 공사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호, 2023. 6. 30.)」 제86조 제9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중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56) 관급자재로 직접구매(설계변경)시 도급액 감 59,400천 원, 관급액 증 43,819천 원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 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된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 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포항시 과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에 대해 운반거리가 100m에서 61.2m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 447천 원 및 교통안전시설 공종의 안전관리비(경비) 항목 미적용 건에 대해 과다계상된 사업비 20,815천 원의 감액을 위한 적절한 조치(실정보고 또는 설계변경 등)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비산먼지 억제 시설 미설치 등 현장관리 부적정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36,842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포항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포항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구 =구	!! @@	노후하수관로 정비 L= 6.96km	16,707	'20. 8. 6.	'20. 8. 14. ~ '23. 11. 25.	(시공사) %%개발(주) %% (건설사업관리자) @@@	
하수관로 정비사업	**	##	관로정비 L=42km 배수설비 2,156가구	30,127	'19. 2. 25.	'19. 2. 27. ~ '23. 12. 31.	(시공사) !!건설(주) 외1 !!!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외3 \$\$\$ 외3	
하수관로 정비사업	&&	%%	관로정비 L=52km 배수설비 3,056가구	28,676	'20. 5. 27.	'20. 5. 28. ~ '24. 5. 6.	(시공사) nnnn(주) nnn (건설사업관리자) \$\$\$\$공단 외 \$\$\$ 외	
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	^^	관로정비 L=20km 배수설비 1,192가구	17,910	'20. 7. 21.	'21. 7. 22. ~ '23. 12. 20.	(시공사) pp건설(주) 외1 ppp 외1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외3 \$\$\$ 외	

## 1. 하수관로 검사(연막시험) 분리 발주 미실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19. 6.)」에 따르면 하수관거 설계 시 시공이나 사업준공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지방서에 언급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경사검사, 수밀시험, CCTV조사, 연막조사 등을 검사품<sup>57)</sup>에 반영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수밀검사 및 CCTV조사 등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sup>58)</sup>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포항시 ~~○○○~~과에서는 “AAA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하수관로 정비사업”, “□□,□□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하수관로 품질검사(CCTV 조사 및 수밀시험)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리 발주하였으나 배수설비 관로에 대한 연막시험 검사는 분리 발주 하지 않고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시공사가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연막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2.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표준시장<sup>59)</sup>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공사 설계 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57) 하수도표준지방서에 따르면 시공단계에서는 오수관로 전체에 대해 경사 및 수밀검사, CCTV조사, 연막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단계에서는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가구의 5%에 대해 수밀검사, CCTV 조사, 연막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58) 환경부 ※ 67712-549호(2003.5.22.)로 하수관거 품질시험 시 분리 발주 또는 직접시행 하여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

59) 표준시장 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

그런데 포항시 ~~○○○~~과에서는 “AAA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였으나 아래 [표 2]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시장 단가가 아닌 건설표준품셈 기준에 따른 단가산출을 적용 후 발주하여 표준시장 단가 대비 254,040천 원(계경비 포함)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표 2] 설계 단가 적용 현황

(단위 : 천 원)

공사명	공종	단가산출 적용	표준시장단가 적용	증감
AAA 하수관로 정비사업	토류관 설치 및 철거	228,610	162,470	감 66,140
<del>○○○</del> 하수관로 정비사업	터파기, H-pile항발 등	519,200	331,300	감 187,900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미선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4항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건설안전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포항시 ~~○○○~~과에서는 “AAA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하수관로 정비사업”, “□□,□□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점검은 이행하였으나,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아닌 건설사업자가 선정한 업체 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한 업체와 해당 공사에 대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 4. 품질관리자 배치 및 인건비 지급 미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로 정하고 품질관리자 2인(중급기술인 1명과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 3] 계약금액의 정산항목 및 규정

정산항목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환경보전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AAA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하수관로 정비사업”, “□□,□□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물가변동액을 반영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항목에 대한 물가 상승분 329,318천 원 상당을 정산 조치 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4]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영 현황

(단 위 :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회	물가상승분 반영액	정산항목 제외 물가상승분 반영액	정산항목 물가상승분 반영액	비 고
계	3건					
○○○과	AAA 하수관로 정비사업	1회	996,029	926,858	69,171	미정산
		2회	667,244	621,141	46,103	미정산
		3회	498,813	470,814	27,999	미정산
		4회	483,600	455,176	28,424	미정산
	㉸㉸㉸ 하수관로 정비사업	1회	904,362	839,270	65,092	정산
		2회	569,703	530,785	38,918	정산
		3회	721,393	673,523	47,870	미정산
		4회	608,017	568,779	38,238	미정산
	□□,□□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1회	601,784	561,544	40,239	미정산
		2회	396,448	365,173	31,274	미정산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중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및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AAA 하수관로 정비사업”, “㉸㉸㉸ 하수관로 정비사업”, “□□,□□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수설비 공사 시 발생 되는 토사를 이용해 정화조 폐쇄를 하였음에도 잔여토사에 대한 처리 및 운반비용을 포함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정보고 및 167,050천 원<sup>60)</sup>(제경비포함)을 감액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0) AAA 하수관로 정비사업 : 잔토 유용 4,494㎡ / 감액 금액 : 57,490천 원  
 ㉸㉸㉸ 하수관로 정비사업 : 잔토 유용 5,074㎡ / 감액 금액 : 83,270천 원  
 □□,□□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 잔토 유용 2,885 ㎡ / 감액금액 : 26,290천 원

또한 “포항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12. 8.)」에 따라 동결심도61)를 산정한 결과 포항시 관내 지역에는 동상방지층(40cm)이 불필요 함에도 공사에 반영하여 시공하는 등 사업비 190,021천 원 (제경비 포함)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적치장 내 이동식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운반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미조치 및 42,636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539,005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61) 설계동결깊이(포장 단면에 동결 현상이 발생하는 깊이)를 산정한 결과 21.4cm로써 포장 두께는 32cm로 동결이 발생하는 깊이보다 깊이 동상방지층 불필요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천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천 내 중금속으로 오염된 퇴적물 처리를 위해 “▶▶천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천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공사	포항시 =구 --동	오염토정화 시설 설치 1식	4,146	3,591	555	'22. 1. 13.	'22. 1. 20.~ '23. 11. 12.	◊◊◊◊◊◊◊◊ (주) ◊◊◊◊	45.7%
오염토 정화시설 (특정공법)	포항시 =구 --동	오염토 정화시설 (기계) 1식	13,452	-	13,452	'21. 12. 27.	'21. 12. 27.~ '24. 5. 10. (유지관리기간 6개월 포함)	◊◊◊◊◊◊◊(주) ΣΣΣ	88.6%

**1.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 부적정**

포항시 ◊◊◊◊과에서는 ◊◊◊◊과-4326(2019. 8. 5.)호로 ‘오염토·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공법선정(기술제안)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포항시 공고 제2019-◊◊◊◊(2019. 8. 7.)호로 ‘오염토 및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설치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아래 [표 2]와 같이 하였다.

[표 2] 공법선정 안내공고 내용

공 법	설치위치	시설용량	사업기간	비 고 (사업비)
오염토 및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경북 포항시 =구 --동 970-9번지(♣♣부지)	시설용량 : 50m <sup>3</sup> /hr (25m <sup>3</sup> /hr×2열)	2019. 10.~2020. 6.	100억 원 정도62)

위 공고문의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공법선정 시 기술의 적정성(25점), 기술의 안전성 및 효율성(20점), 유지관리용이성(15점), 기술의 경제성<sup>63)</sup>(23점), 사업실적(5점), 보증기간(5점), 기술개발실적 보유현황(2점), 재정상태 건실도(5점)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의 경제성 평가는 아래 [표 3], [표 4]와 같이 공사비 평가와 유지관리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공사비 평가기준**

구 분	70%이상~100%미만	100%이상~110%미만	110%이상~120%미만	120%이상~130%미만	130%이상 70%미만	비 고
점 수 (15점 만점)	15.0	13.5	12.0	10.5	9.0	해당공법 공사비 제안공법 평균공사비

**[표 4] 유지관리비 평가기준**

구 분	90%미만	90%이상~100%미만	100%이상~110%미만	110%이상~120%미만	120%이상	비 고
점 수 (8점 만점)	8.0	7.2	6.4	5.6	4.8	해당공법 유지관리비 제안공법 평균유지관리비

따라서 포항시  $\diamond\diamond\diamond\diamond$ 과에서는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시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하여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기술의 경제성 평가는 절대평가 항목임에도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는 문구를 혼용하였으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sup>64)</sup>하고, 공법선정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 반영”이라는 문구를 넣어 위원들에게 상대평가<sup>65)</sup>를 하도록 하였으나, 아래 [표 5]와 같이 7명의 평가위원 중 1명의 위원(WWW)을 제외하고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같은 숫자를 적어 평가하였고,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 시

62) 공법선정(기술제안)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내부결재 문서에 사업비를 기재

63) 공사비(15점)+유지관리비(8점)=23점

64) 감사 기간 중 포항시  $\diamond\diamond\diamond\diamond$ 과에서는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공법선정과 관련한 설계사를 확인할 수 없음

65) 행위 당시 담당자 VVV 팀장이 정년퇴직하여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경제성 평가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음

공고문과 다르게 기술의 경제성 평가 항목의 분자와 분모를 반대로 계산<sup>66)</sup> 후  $\diamond\diamond\diamond\diamond$ 과-5489(2020. 8. 21.)호로  $\text{\textcircled{A}}\text{\textcircled{B}}\text{\textcircled{C}}\text{\textcircled{D}}$ (주) 외 2개사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5] 위원별 기술의 경제성 평가 내용**

(단위 : 억 원)

구분	(주)*F*F종합건설	(주)ㅇㅇ엔지니어링	▽▽▽▽▽(주) 외 4개사	⊕⊕⊕⊕(주) 외 2개사	비 고	
업체 제안 공사비(A) (절대평가)	37.14	39.77	59.55	142.71		
위원 평가 공사비(B) (상대평가)	AAA	33.76(-3.38)	39.78(+0.01)	59.54(-0.01)	142.71(0)	(A)-(B)
	BBB	33.76(-3.38)	39.78(+0.01)	59.54(-0.01)	142.71(0)	
	C C	33.76(-3.38)	39.78(+0.01)	59.54(-0.01)	142.71(0)	
	WWW	37.00(-0.14)	39.00(-0.77)	59.00(-0.55)	142.00(-0.71)	
	QQQ	33.76(-3.38)	39.78(+0.01)	59.54(-0.01)	142.71(0)	
	TTT	33.76(-3.38)	39.78(+0.01)	59.54(-0.01)	142.71(0)	
YYY	33.76(-3.38)	39.78(+0.01)	59.54(-0.01)	142.71(0)		
업체 제안 유지관리비 (절대평가)(C)	34.01	18.90	112.56	50.59		
위원 평가 유지관리비 (D)(상대평가)	AAA	34.01(0)	18.90(0)	185.64(+73.08)	80.59(+30.00)	(C)-(D)
	BBB	34.01(0)	18.90(0)	185.64(+73.08)	80.59(+30.00)	
	C C	34.01(0)	18.90(0)	185.64(+73.08)	80.59(+30.00)	
	WWW	34.00(-0.01)	19.00(+0.10)	185.00(+72.44)	80.00(+29.41)	
	QQQ	34.01(0)	18.90(0)	185.64(+73.08)	80.59(+30.00)	
	TTT	34.01(0)	18.90(0)	185.64(+73.08)	80.59(+30.00)	
YYY	34.01(0)	18.90(0)	185.64(+73.08)	80.59(+30.00)		

※ 포항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분자와 분모를 당초 평가 기준대로 적용하고 절대평가를 하였을 경우 아래 [표 6]과 같이 업체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아 정당하게 선정될 수 있는 업체의 공법선정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표 6] 공법선정 평가 결과**

순위	평가결과(당초)		평가결과(재산정)		비 고
	업체명	점수	업체명	점수	
1	⊕⊕⊕⊕(주) 외 2개사	78.65	▽▽▽▽▽(주) 외 4개사	77.41	
2	▽▽▽▽▽(주) 외 4개사	77.61	⊕⊕⊕⊕(주) 외 2개사	76.25	
3	(주)ㅇㅇ엔지니어링	65.75	(주)ㅇㅇ엔지니어링	68.95	
4	(주)*F*F종합건설	64.22	(주)*F*F종합건설	6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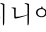
※ 포항시 제출자료 재구성


66)  $\frac{\text{해당공법 공사비(유지관리비)}}{\text{제안공법 평균공사비(유지관리비)}}$  를  $\frac{\text{제안공법 평균공사비(유지관리비)}}{\text{해당공법 공사비(유지관리비)}}$  로 평가

## 2. 건설엔지니어링 미발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8조에 따르면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로서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천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무자격자(67)에게 공사에 대한 설계서를 납품받아 설계서에 대한 검토 없이 발주하였고, 착공 이후 설계에 대한 건축법 저촉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23. 1. 20. 공사비를 1,610백만 원에서 4,050백만 원으로 2,440백만 원 증액 후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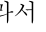
## 3. 공사기간 산정 및 연장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 2021. 9. 17. 시행)」 제3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적정

67) 오염토·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 : 산업(주)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산정 시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위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68)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설계자로 하여금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천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기간(210일)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2. 1. 20. 착공 이후 설계에 대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2022. 6. 10. 공사 중지까지 약 5개월가량 공사를 중지하지 않았으며, 이후 설계서를 보완하여 2023. 1. 17. 공사 중지 해제 후 2023. 1. 20.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10일에서 441일(증223일)로 적정한 근거 없이(69) 연장하였고, 감사 기간 중 아래 [표 7]과 같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한 결과 441일 보다 362일 늘어난 80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68)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69) 공사 계약기간 연장 시 당초 공사비(공사기간) 대비 변경 공사비(공사기간)를 비례식으로 산출 후 임의 조정

[표 7]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한 공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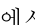



공사기간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비고
803일	30일 + 200일 + 543일 + 30일	



※ 포항시 제출자료 재구성

#### 4.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등)에 따르면 발주청<sup>70)</sup>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①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④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천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임에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포함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70)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sup>71)</sup> 저감을 위해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b>▲▲▲▲▲▲▲▲</b> 비점오염 저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항시 -구 ++동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918	918	-	'20. 3. 18.	'20. 3. 24.~ '21. 9. 5.	주목 외 1개사	100%
<b>▲▲▲▲▲▲▲▲</b>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포항시 -구 ++동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 등	6,974	3,768	3,206	'22. 6. 17.	'22. 6. 23.~ '23. 12. 18.	LLLLLL (CCCC)	62.7%

### 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비요율 과다 적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3조(요율)에 따르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아래 [표 2]와 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분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5배, 산업플랜트<sup>72)</sup>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를 곱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71)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72)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표 2] 건설 및 산업플랜트 부문의 요율

구 분	공 사 비	업무별 요율(%)						비고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산업플랜트	
실시설계	50억 원 이하	4.67	3.62	5.69	6.15	3.96	4.99	
	100억 원 이하	4.15	3.43	5.01	5.41	3.47	4.65	

그리고 같은 기준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에 따르면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면서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산업플랜트 요율을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 후 1.31배를 곱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과-1069(2020. 1. 9.)**호로 “**▲▲▲▲▲▲▲▲** 비점오염 저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산업플랜트 부문의 요율(4.72%×1.31배=6.18%)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건설 부문(상수도)의 요율(5.55%×1.45배=8.05%)을 적용하여 186,087천 원을 과다 계상 후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 2.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 2021. 9. 17. 시행)」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에 따르면 발주청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시·군·구는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임에도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지 않았다.

### 3. 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구 분	조치 내용	비고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4조(전문가의 지정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임에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2023. 5. 4. 현장 내 근로자가 거푸집 조립 작업 중 넘어져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하였다.

### 4.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등)에 따르면 발주청<sup>73)</sup>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①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④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73)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임에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 5. CCTV조사 및 수밀검사 일괄 발주 부적정

환경부에서는 ◎◎-67712-549(2003. 5. 22.)호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하수관거의 신설 또는 개량공사 시 CCTV조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함에 따라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하수관거 CCTV조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하수관거 공사 시 CCTV조사 및 수밀검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하여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수관거 공사 시 CCTV조사 및 수밀검사 31,559천 원(제경비 포함)을 분리 발주하거나 직접 검사하지 않고 도급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하였으며, 도급자가 CCTV조사 및 수밀검사를 할 경우 검사의 실효성이 없어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6. 공사원가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포항시 ◇◇◇◇과에서는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조립식 간이휴막이 설치 및 해체의 경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업체에서 제시하는 품을 적용하여 41,75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시공상세도 작성비 32,191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63,75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에서는 건축주 (주)▼▼▼▼로부터 2021. 5. 18. 포항시 +구 ++동 444-4번지 등 4필지 상 노유자시설 신축(연면적 2,755.6㎡)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 해 2. 11. 건축허가 처리한 사항 관련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

### 1. 노인복지시설 복도의 너비 등 설치기준 부적정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정 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8m 이상, 1,000㎡ 이상인 경우 2.4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은 복도 유효너비가 바닥면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건축허가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하면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2021. 5. 18. 건축주 (주)▼▼▼▼이 포항시 +구 ++동 444-4번지 등 4필지에 신청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신축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노인복지시설의 지하 1층~4층 바닥면적이 624.36㎡~527.76㎡로 500㎡ 이상 1,000㎡ 미만일 경우에는 복도 유효폭을 1.8m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6m인데도 관련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시정 및 보완 요구 없이 아래 [그림]과 같이 2022. 2. 11. 건축허가 처리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 시켜 화재 시 대피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노유자시설(노인복지회관) 복도너비 관련 건축허가 부적정 현황

대지위치	건축허가	건축주	주용도	연면적 (㎡)	적 정 복도너비	실 계 피난거리	비 고
포항시 +구 ++동 444-4 등 4필지	22.2.11.	(주)▼▼▼▼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2,755.6 (B1층 624.36) (1층 547.96) (2층 527.76) (3층 527.76) (4층 527.76)	1.8m이상	1.6m	0.2m 미달

[그림]

### 2. 건축허가 신청서류 보완 부적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직권 또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직권 연장은 연장기간 10일 이내이며, 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연장은 허용 횟수를 2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따라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였을 경우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으면 직권 또는 건축허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보완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때 직권 연장하면서 10일이 넘는 보완기간을 부여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보완기간 연장을 3회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건축주 (주)▼▼▼▼이 2021. 5. 18. 신청한 노유자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배연설비 및 장애인시설 관련기준 등이 미흡하여 같은 해 6. 8.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후 진입도로 및 주차면 확보 등이 미흡하여 같은 해 6. 30. 직권으로 30일이 넘는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등 정당기간 10일을 넘겨서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마감일인 2021. 7. 30.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4일이 지난 2021. 8. 3. 및 2021. 10. 26. 2회에 걸쳐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보완기간을 연장해 준 후 다음 해 2. 11.에서야 건축허가를 수리하였다.

그 결과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및 과도한 지연 사례를 방지하고자 민원 서류 보완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 취지를 훼손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민원처리 부적정 현황**

접수일	민원명 (건축주)	대지위치	용도	연면적	보완 요구 현황			
					보완 횟수	요구일	완료일	부적정 현 황
'21.5.18.	(주)▼▼▼▼	포항시 +구 ++동 444-4번지 등 4필지	노유자시설	2,755.6	2	'21.6.8.	'22.2.11.	직권요구 10일초과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 목**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포항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포항시 ◊◊◊◊과에서는 포항시 -구 -면 --리 370-6번지 AAAA운동장 시설 확충 공사 등 아래 [표 1]과 같이 2건의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를 담당하면서 2019. 1월부터 2023. 9월 감사일 현재까지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의뢰, 처리하였고 우수유출 저감대책, 설계용역 평가, 저작권 및 설계변경 미이행 등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건축 협의	착공 (완료일)	설계 금액	공사 금액	도급자 / 감리자	비 고
AAAA운동장 시설 확충 공사	운동시설 2,269.34㎡	◊◊◊◊과 (19.1~23.11)	23.3.14. (협의지연)	22.1.14 (착공신고)	340	6,088	(주)^^건설 / (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건축협의 착공신고 수리전시행
BB BBBB BBBB센터 BBBB센터 건립공사	체육센터 및 공공청사 3,747㎡	◊◊◊◊과 (19.3~23.11)	22.1.20. (협의지연)	22.1.7 (착공신고)	474	9,735	(주)!!!건설 / (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건축협의 착공신고 수리전시행

**1. 건축협의 및 착공신고 등 사전절차 이행 부적정**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 VVVV과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용건축물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허가나 신고와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특례를 인정할 뿐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협의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공사 시행 전에 건축허가 서류를 구비 하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후 계약을 의뢰하고, 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AAAA운동장 시설 확충 공사 등을 추진 하면서 착공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협의 및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으나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22. 1. 14. 공사를 선 착공 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 해 3. 14. 건축협의를 하였고 약 1년 8개월 동안 착공신고 수리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사후 건축협의 과정에서 10여 차례 보완 등으로 지상층 구조변경(철골조→각파이프), 토목기초(오픈컷→시트파일) 및 장애인시설 보강으로 철골보, 단열재 훼손 등 시공품질을 저하시켰고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했다면 불필요한 설계변경 요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 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건축협의 지연 및 착공신고 미이행 등으로 공사기간 증가, 공사비 증액, 감리비 증액, 구조검토 소홀 및 안전 관련 설계도면 검토 등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추락,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이동식비계 설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등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sup>74)</sup>, 수직보호망<sup>75)</sup> 또는 방호선반<sup>76)</sup>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설시공 등의 발생 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단계별 시공 상태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74)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 설치  
75)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76)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AAAA운동장 시설 확충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탈락 또는 훼손된 경우 즉시 재설치 하도록 하며, 안전웬스를 설치 확인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이번 감사기간(2023. 9. 4.~22.) 중 위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아래 [그림 1]과 같이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캡, 안전난간 설치 및 공사현장 출입 통제시설이 미흡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와 이동식비계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관련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1]

### 3.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등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AAAA운동장 시설 확충 공사를 추진하면서 아래[표 2] 및 [그림 2]와 같이 설계내역서와 달리 전망대 철골보를 발주청에 실정보고도 하지 않고 각파이프로 변경하였고 마감재 변경, 사토 운반거리 정산을 하지 않는 등 2023. 9. 22. 감사일 현재 설계변경이나 감액을 하지 않고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전망대 구조변경, 마감재변경 및 사토 미정산 등으로 공사비 291,375천 원(세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었고 장애인시설 협의에 따른 재시공 등으로 철골보, 단열재 훼손 등 안전 및 시공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주요 미실시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지적사항	당초		변경		공사비증감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건					△ 291,375	

1	사토 운반거리 (10km→5km)	4,320㎡	38,256	800㎡	3,945	△ 34,311	
2	운반거리 (시멘트 20km→12.8km) (철근 10km→23km)	1식	3,913	1식	3,561	△ 352	
3	전망대(철골보→각파이프)	6.413t	18,076	1.611t	8,470	△ 9,606	실정보고 없이 선시공
4	입면 디자인 변경 (금속천장재→흡음텍스) (노출콘크리트→SI·복합패널) (메탈패브릭 변경)	1식	693,504	1식	516,654	△ 176,850	
5	삼중유리→복층유리	1식	165,136	1식	94,880	△ 70,256	

[그림 2]

#### 4. 설계용역 감독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9조에 따르면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및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용역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성과를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건축설계 용역 감독을 수행하면서 설계 용역 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성실하게 감독하고 준공검사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 성과를 확인·점검하여 부적합할 경우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고 납품기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AAAA운동장 시설 확충 공사 설계용역 준공검사를 2021. 10. 10. 시행하면서 용역성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공사 착공 후 기초공법 변경(오픈컷→시트파일) 및 전망대 구조변경(철골조→각파이프) 등 설계변경을 하게 하였고, 납품도서가 미흡한데도 지체상금

29,614천 원을 부과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21. 12. 20. 최종납품 후 용역비를 지출하였고 838백만 원의 공사비를 증액하였으며, 146일의 공기연장과 203백만 원의 감리비를 증액시키는 등 행정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AAAA운동장 시설 확충 공사 설계용역 현황

(단위 : 백만 원)

용역명	용역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계약 일자	착수 일자	설계 금액	공사 금액	설계자	비고
AAAA운동장 시설 확충 사업 실시설계 용역	운동시설 실시설계 2,269.34㎡	☐☐☐☐과 (21.5~21.10)	21.5.7.	21.5.14.	340	6,088	건축사사무소 CCCC	지체상금 0.13%

#### 5. 우수유출 저감대책 미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시설<sup>77)</sup>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이전을 포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AAAA운동장 시설 확충 공사의 설계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지면적이 2,000㎡를 초과한 7,999㎡이어서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데도, 이러한 계획과 대책 수립을 누락한 설계서와 관련하여 시정조치 및 보완요구 없이 2021. 10. 10. 실시설계용역을 준공 처리하였다.

77)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

그 결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6. 설계공모 관련 저작권 귀속 부적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6조 및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창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으며, 공모전을 주최하는 기관은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sup>78)</sup>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고, 입상작에 대해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을 발표한 후 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해당 응모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인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정거래 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해 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항은 설계 공모전에 대해 참여를 유도하려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의 성격이므로 권리 양수의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설계자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은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기에 무효라고 되어 있다.

78)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공모전의 주최 기관이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됨

따라서 포항시에서는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 설계공모 지침서 상 제출 작품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귀속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후 활용 등에 관하여는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포항시 ☐☐☐☐과에서는 AAAA운동장 시설 확충공사 및 BB BBBB BBBB센터·BBBB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 설계공모 지침서상에 당선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포항시에 귀속되고 당선작 외의 작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저작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응모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설계자의 저작권 등을 포항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설계공모지침서에 공고하여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7. 설계용역평가 미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2억 2천만 원 이상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술인의 적정성, 과업 이행 결과의 적정성 및 과업 이행내용의 충실성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 자료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작성·제출토록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과에서는 AAAA운동장 시설 확충 공사의 착공일인 2022. 1. 14. 후 6개월 이내인 2022. 7. 14.까지, BB BBBB BBBB센터·BBBB센터 건립공사의 착공일인 2022. 1. 7. 후 6개월 이내인 2022. 7. 7.까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설계용역평가를 하여 과업 이행 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포항시 [X][X][X][X]과에서는 AAAA운동장 시설 확충 공사 설계 용역의 용역금액이 340백만 원, BB BBBBB BBBB센터·BBBB센터 건립공사는 474백만 원으로 220백만 원이 넘어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인데도 감사일 현재 까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용역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설계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8.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 및 관계전문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시 [X][X][X][X]과에서는 BB BBBBB BBBB센터·BBBB센터 건립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건설사업자가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 등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는지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포항시 [X][X][X][X]과에서는 BB BBBBB BBBB센터·BBBB센터 건립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흠막이 공법 변경 등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없이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둔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291,375천 원(제경비 포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설계변경(감액) 하시기 바라며,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